

변상금 부과고지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부과 내용	재산의 표시			점유 면적 (㎡)또는 사용수익 유형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			변상금 산출		비고
					재산가액	사용요율	연간 사용료	부과기간	변상금 (원)	

귀하가 위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않고 사용·수익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 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 . . 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변상금 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중앙관서의 장 **작 인**

귀하

주: 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명세를 적습니다.